

합의서 대인

피해자	주소
	성명 박희찬
가해자 (피보험자)	주소
	성명 조남규
공동불법행위자	주소
	성명

2025년 10월 31일 19시 14분경

경기 의정부시 의정부동 의정부역 앞 에서

'가해자' 소유의 273어4793 호 차량(타차: 소유 호 차량)이 야기한 자동차사고로 '피해자'가 피해를 입은데 대하여 '피해자'는 '가해자' 또는 '가해자'의 대리인 '삼성화재해상보험'으로부터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금을 포함한 다음 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확실히 수령하고 상호 원만히 합의하였습니다. 이에 본 합의 내용 및 사안(공동불법행위 사고 시,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내용 포함)에 대하여 당사자 모두 동의하였으며, 이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. 또한 '가해자'의 대리인인 '삼성화재해상보험'으로부터 손해사정 내용 및 보험금 지급 항목을 설명 받았으며, 장래 치료를 위한 비용을 합의금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비용의 한도내에서 이번 사고로 인해 발생한 상해와 동일 부위의 동일 증상에 대하여 지속 치료시 다른 보험의 적용이 제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받았음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 후일의 증거로 이 합의서에 서명 날인합니다.

수령금액 금 일천 사백 만 원정 (₩ 14,000,000)

내용 및 조건	위 금액을 법률상 손해배상금 일체로 수령하기로 함.

대인배상보험금 지급항목 지급항목에 체크(✓)

부상보험금	✓	후유장애보험금	✓	사망보험금	
위자료		위자료	✓	위자료	
휴업손해	✓	상실수익액	✓	상실수익액	
간병비		가정간호비		장례비	
그 밖의 손해배상금 등	✓				
적극손해(기존 치료관계비)	미포함				

* 동일 항목은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으며, 부상 위자료와 후유장애 위자료가 중복될 경우에는 양자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합니다.

* 보험금 지급 종결 시, 최종 보험금 지급내역 등에 대해 추가로 안내해드립니다.

'삼성화재해상보험'으로부터 손해사정관련 중요사항 및 보험금 지급항목을 설명 받았습니다. 예 아니오

20 26 년 02 월 24 일 위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 성명 박희찬 (인) 주민등록번호 930630-1*****
위 가해자 또는 대리인 성명 (인)

송금의뢰

상기 보험금을 아래의 은행계좌로 송금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.

은행명	카카오뱅크	예금주	박희찬	계좌번호	3333-13-9294785
-----	-------	-----	-----	------	-----------------

송금 의뢰인(동의인) 성명 박희찬 (인) 주민등록번호 930630-1011817
전화번호 010-8386-5338